【 2016.10.07(금) 건설경제

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죄가 되는지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취지 로확인됐다. 루됐을 정도로 공사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있는 일이며 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이 불법 대여에 연 이름으로 제출된 착공신고서만 500여건 회사의 작공신고서와 현장 실태 등을 와 함께 경기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 석해 면허 불법 대여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국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씨 등 2개 건설사 경찰은 약 3개월 전부터 대한건설협호 면허 대여가 만연한 것으

은 약 300만원을 내고 면허를 가진 건설 상 비싸진다는 점에서 적발된 건축주들 수법으로 사의 이름으로 작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이 1억원 이 건물을 지으면 보통 시공사에 의뢰할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공사 비용을 아낀] 것으로 동화

을 짓고 관리할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건물 적 662m'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 속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

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上暑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 등 92 축주 허모(47)씨와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돈을 주고 빌린 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

건설업자 무더기 적발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받은

아하! 그렇구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공동수급협정을 통하여 대표자가 공학을 을 거친 공사비의 증가를 공동원가에 반영하여 다른 공동수급 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동원가를 집행하고, 나머지 구성원들 이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원가를 분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이러한 공동원가분담 의무 는 구성원으로서의 출자 의무이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경우 다른 구 성원들은 공동수급운영협정에 따라 대표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개별적인 공동원가분담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조합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에 대해서까지 보충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33284 판결).

이는 공동원가를 선지출한 대표자에 대한 나머지 구성원의 공동원가분담 의무를 구성원들의 개별채무라고 본 것이다. 그 러나 공동원가분담 의무가 조합채무인지 또는 개별채무인지는 공동수급인 사이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각 시공사들이 각 공구별로 분담 시공하는 경 우에는, 담당 공구의 시공에 실제 투입된 비용과 무관하게 사전 에 공동수급체가 협의하여 정한 실행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실행예산 금액이 각 시공사별로 부담하는 공사원가가 되고 실 제 투입된 비용이 당초 예상과 달리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의 분담을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일부 시설의 설치예정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이 이미 예상되었고 설치장소의 변경에 따라 운반거리 가 변경되면 담당 시공사는 공사비 부담이 증가하므로, 감리원 의 승인 하에 그 시설의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감리단의 확인

체들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되, 그에 앞서 각 공동수급체들의 현 장소장으로 구성된 기술분과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 사 안이 있다.

이것은 어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감리원의 승인 내지 확인 하에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에 공정 하고 원활한 분담금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 는 것으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의 유무와 액수를 조사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설치 장소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관하여 기술분과위원회 또는 시공운영원회에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설 치장소 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하여 갖는 공동원가분담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 를 실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다. 이의가 있는 공동수급 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 당한 공동원가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한편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였으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공동원가분담금채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1다 79838 판결).

> 이용세 법무법인 바른 변호시

